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48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19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3년 10월 9일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278호)과 2023년 10월 11일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294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시책 강구 방안을 넘어 그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함.

- 또한,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명시하고, 현행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내 명시된 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예산 수립·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의2).
- 다.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의2).
- 라.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, 안 제7조).
- 마.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, 안 제8조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”을 “시장의 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육성을 위하여”를 “확충 및 지원·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 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”을 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5조의3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서울특별시에 위치한”으로, “계획”을 “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자료제출)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”을 “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원사업”을 “제4조에 따른 경비 보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6조의”를 “법 제16조 및 법

제29조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29조의 그 취소 등”을 “취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조의2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제3항 중 “호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”을 “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”으로, “알려야”를 “통보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·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확충 및 지원·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</u> -----.</p> <p>② <삭 제></p> <p>②·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
<p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)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) -----<u>법 제5조의3</u>-----<u>서울특별시에 위치한</u>----- <u>시행계획을</u>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제5조의2(자료제출)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<u>박물관·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제4조의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16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법 제29조의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6조(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<u>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제3조의2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</p> <p>2. 제4조에 따른 경비 보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1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<u>호선하며</u>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호선한다.</p> <p>④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7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<u>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</u>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 ----- <u>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---통보하여야 ---.</u> ----- <u>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-----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